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95호

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458호, 2013.7.22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 일부개정안**

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제4항” 및 “제5항”을 각각 “제5항” 및 “제6항”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.

현 행	개정안
<p>제1조 ~ 제2조(생략)</p> <p>제3조(집행기본계획서 제출) ①~③ (생략)</p> <p><u>&lt; 신 설 &gt;</u></p> <p>④발주청장은 대안입찰 또는 실시 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려면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이 시·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최저가낙찰 공사 발주대상인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발주청장은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1조 ~ 제2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집행기본계획서 제출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<u>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 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정안
<p>제4조 (생 략)</p> <p>제5조(심의기준 등)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<u>&lt; 신 설 &gt;</u></p> <p>제6조 ~ 제9조(생 략)</p>	<p>제4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심의기준 등)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<u>④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</u>  <u>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</u>  <u>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</u>  <u>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</u>  <u>찰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</u>  <u>에게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 ~ 제9조(현행과 같음)</p>